##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범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18

발의연월일: 2020. 7. 3.

발 의 자 : 박범계·장철민·홍성국

고용진・이상민・송갑석

박영순 · 황운하 · 어기구

김남국 · 장경태 · 김승원

이수진 · 한준호 의원

(14인)

### 제안이유

지식재산권은 건물 등의 부동산과 같은 유체물과 달리 형태가 없는 무체재산권이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, 그 가치를 평가하여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음. 예컨대 특정 건물에 대한 가치는 공시지가, 실거래가 등 여러 가지 평가지표 등으로 인해 침해로인한 손해를 산정하기 용이한 반면, 디자인권의 경우 그 디자인이 갖는 경제적 가치는 디자인권자의 창작적 노력과 소비자의 평가에 따라결정되기 때문에 그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그 손상된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기 어려움.

디자인권자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창작한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은 창작의 장려를 통해 소비자의 이용편의와 산업의 발전을 도 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. 이처럼 타인이 창작한 디자인을 고의적으 로 침해하여 이득을 보는 행위는 창작자의 창작의지를 꺾는 것으로서 소비자의 편의저하는 물론 산업발전에도 역행하는 행위이므로, 이를 엄정히 근절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본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, 타인의 등록된 디자인을 고의적으로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로 인하여 손해액으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디자인 권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한편, 현 손해액 산정방식 중하나인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시장의 기준보다 낮게 산정되어 적정한 손해액 산정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손해액을 시장의 현실에 부합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- 가.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중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'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'에서 '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'으로 변경함(안 제53조제2항, 제115조제4항).
- 나. 고의적으로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하도록 함(안 제115조제7항 및 제8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제2항 중 "통상적으로"를 "합리적으로"로 한다.

제115조제4항 중 "통상적으로"를 "합리적으로"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법원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.
- 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1.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
- 2.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
- 3. 침해행위로 인하여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
- 4.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
- 5. 침해행위의 기간 횟수 등
- 6.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
- 7.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

8.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 관한 적용례) 제115조제7 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 용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3조(출원공개의 효과) ① (생	제53조(출원공개의 효과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	②
에 따라 경고를 받거나 제52조	
에 따라 출원공개된 디자인임	
을 알고 그 디자인등록출원된	
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	
인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	
그 경고를 받거나 제52조에 따	
라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안	
때부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	
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등록디	
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	
의 실시에 대하여 <u>통상적으로</u>	<u>합리적으로</u> -
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	
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	
다.	
③ ~ ⑥ (생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115조(손해액의 추정 등) ① ~	제115조(손해액의 추정 등) ① ~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	<b>4</b>
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	
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	

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<u>통상적으로</u>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⑤ ~ ⑥ (생 략) <u><신 설></u>

<신 설>

	 	합리적
<u>으로</u>	 	

- ⑤ ~ ⑥ (현행과 같음)
- ① 법원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.
- 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 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1.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

   지위 여부
- 2.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
- 3. 침해행위로 인하여 디자인권 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

피해규모

- 4.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

  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
- 5. 침해행위의 기간 횟수 등
- 6.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
- 7.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

   <u>태</u>
- 8.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 제 노력의 정도